

리스크관리와 내부통제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이해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변화와 감사위원회의 대응 방안

갑자기 하루 아침에 생긴 제도가 아니다. 기존에도 존재하였고, 가끔 일년에 한 번 정도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내부통제에 일부 문제가 있었지만 잘 해결되었다는 보고를 받았던 내부회계관리제도이다. 그러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구체적인 의미와, 어떤 절차에 따라 무슨 내용이 평가되는지 등의 세부사항을 숙지하기는 쉽지 않았다. 본고는 개정 외부감사법의 내용 중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변화 중 특히 감사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을 집중적으로 검토한다. 그리고 향후 감사위원회가 어떻게 대응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지에 대해 논의한다.

Contents

- I.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인한 회계환경 변화
 - II.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변화
 - III. 운영실태 평가를 위한 감사위원회의 대응: 평가 조직과 고려사항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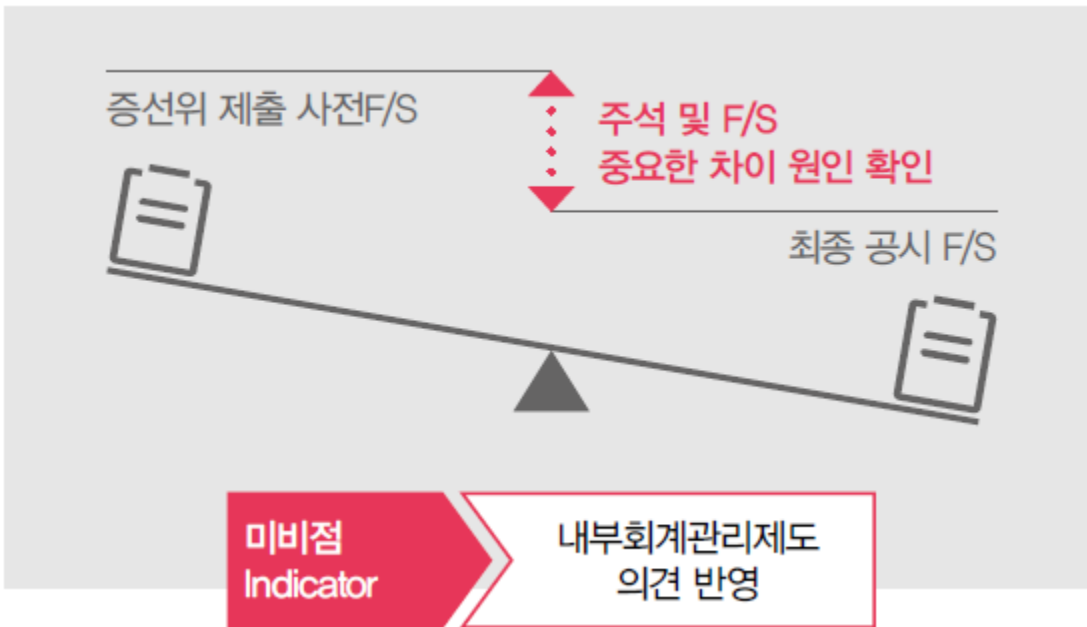
I.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인한 회계환경 변화

첫째, 회계처리기준 위반시 제재 수준이 높아졌다. 회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회사에는 회계처리기준 위반 금액의 20%가 과징금으로 부과되고, 담당 임직원, 감사(위원) 등에게는 회사 과징금의 10%가 부과된다. 이는 과거 자본시장법에서 제시하는 20억 한도의 과징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금액이다. 이와 더불어 금융감독원의 분식에 대한 내부고발 포상금 최고액이 10억원으로 상향 조정되었고, 회사의 내부신고자 보호 의무를 법에 포함하였다.

둘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대표자가 직접 주주총회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보고해야 하며,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인증 수준이 검토에서 감사로 높아졌다. 또한, 규제 기관의 감리 대상에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포함된다. 외부감사인에 의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는 2019년부터 회사 규모별로 순차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셋째, 회사가 감사인에게 재무제표 대리작성 또는 자문을 요구하는 것이 금지된다. 종전에는 그러한 요구를 받아들이는 감사인만이 처벌을 받았으나, 개정된 외부감사법은 회사에 대한 제재도 명시하였다. 이는 회사가 재무제표 작성 과정에서 감사인의 도움이나 의견을 미리 청취하였던 과거 관행을 차단함으로써 외부감사인이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감사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한 조치이다. 특히 외부감사 전에 회사가 제출한 사전재무제표와 감사 받은 재무제표 간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된 내부통제를 평가하여 그 문제의 심각성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의견에 반영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¹



¹ 회계감사실무지침 2018-3. 감사 전 재무제표 확인 등에 관한 회계감사실무지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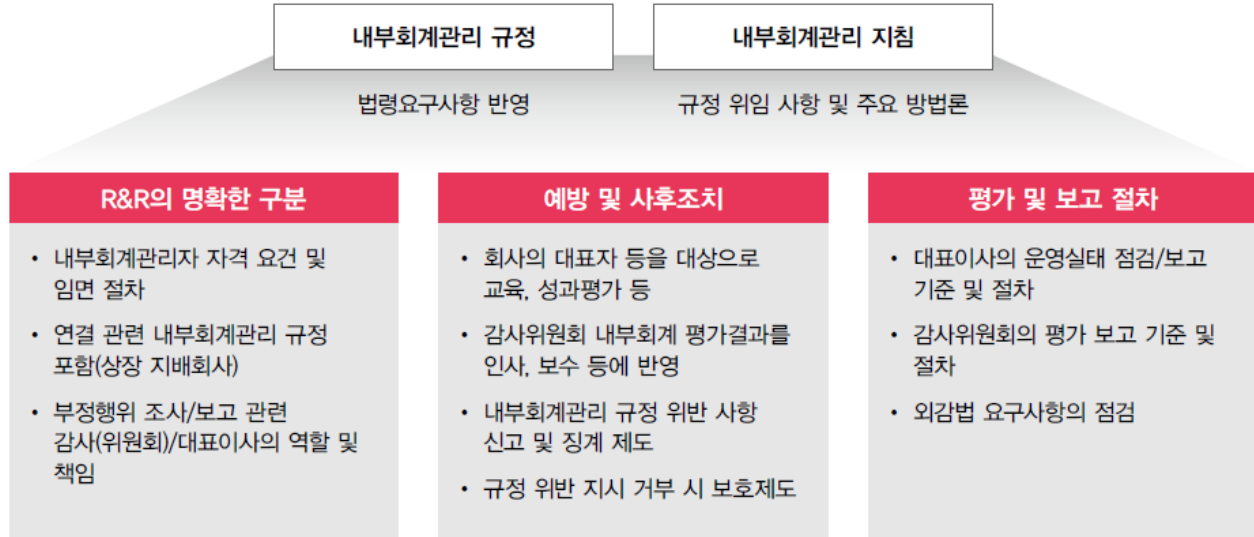
요컨대 지금까지 사전 재무제표 작성에 어려움을 겪었거나, 외부감사 관점에서 재무제표 수정사항이 빈번하게 발견되었다면 충분하고 전문성을 갖춘 회계인력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내부 인력을 충원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다면, 외부 전문가(private accountant)를 활용할 수도 있다. 일정 수준 이상의 회계역량은 개정 외부감사법의 준수를 비롯하여 새로운 회계환경에 안전하게 적응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II.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변화

1. 외부감사법령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된 주요 개정 사항은 운영실태 대면보고를 포함한 대표자의 책임 강화, 외부감사인에 의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및 규제기관에 의한 감리 실시 등이다. 그 외에 개정 외부감사법령은 (1) 내부회계관리규정에 반영하여 운영할 세부 항목을 제시하고, (2)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 및 평가 보고에서 대표자와 감사위원회가 확인할 사항을 구체화하여 명시하였다.

<그림1> 내부회계관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위에서 주목할 사항은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의 예방 및 사후조치에 관한 사항이다. 구체적으로 규정 위반행위 신고제도 운영, 대표자를 포함한 관련 임직원의 교육·훈련 계획, 성과평가, 평가결과의 활용 등이 이에 해당된다. 참고로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서 발표하는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지침 사례가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표1>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 및 평가 보고 시 준수사항

항목	외감법	외감법 시행령(9조)	감독규정
대표자 운영실태 보고	대면 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서 포함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실태점검결과 • 취약점 및 시정 조치 계획/결과 • 충분한 리뷰 및 검토 수행 	점검 절차에 포함할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회계 설계와 운영 • 상시적/정기적 점검체계 • 효과성 점검의 객관적 지표 • 최종의견제시 등
감사(위원회) 운영실태 평가 보고	대면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회계에 의하지 않은 회계정보의 작성과 위조/변조·훼손/따기 금지 확인 • 대면회의 통한 운영실태 평가 • 운영실태 평가보고서 포함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계투명성에 기여 정보 - 운영실태보고서의 오류, 누락 여부 검토 결과 - 시정계획의 적정성 • 주주총회 1주전 이사회 대면 보고 	평가 절차에 포함할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진의 부당한 개입 없는지 확인 • 내부회계관리규정의 실질적 운영을 평가 • 운영실태 보고의 기준 및 절차 준수 여부 평가
공시 사항 (시행세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 • 운영실태보고서, 평가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정과 조직 및 인력 사항 • 검토 및 감사의견

<표1>은 대표자의 운영실태보고서와 감사위원회의 평가보고서 작성시 확인할 사항을 요약한 것이다. 대표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와 운영에 대한 평가를 철저하게 수행하고, 유의한 미비점이 누락되지 않고 보고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를 수행하여 보고서를 작성한다. 감사위원회는 회사가 수행한 평가절차가 외부감사법 등에서 요구하는 내부회계관리규정의 실질적 운영, 평가 및 보고의 기준을 준수하였는지와 평가 과정이 적절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대표자는 감사위원회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확인하여 준비하고, 관련된 사항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질문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운영실태보고서와 평가보고서는 회사의 내부회계관리규정과 함께 사업보고서에 첨부하여 공시해야 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에 따라 보고서에는 유의한 미비점²과 중요한 취약점³ 및 개선조치가 포함된다. 외부감사법령이 요구하는 것은 유의한 미비점 및 중요한 취약점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다. 이는 감사위원회가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기도 하다. 감사위원회는 유의한 미비점이 대표자의 평가보고서에 누락없이 반영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표>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공시

사업보고서 첨부 서류 = 외부 공시되는 서류	
내부회계관리규정 및 당기 변경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감법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내부회계관리규정 첨부
운영실태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감법 및 모범규준에서 요구하는 평가사항에 따른 보고서 공시 – 유의한 미비점, 중요한 취약점 및 개선조치 등 감사(위원회)의 독립적인 평가 결과 포함
감사(위원회) 평가보고서	
외부감사인의 감사(검토)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부감사인의 독립적인 의견
교육 실적 및 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계담당자(내부회계관리자, 회계 담당임원 및 직원) 교육 내역과 경력

2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또 하나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준거기준은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이다. 모범규준은 그 내용이 방대하므로 본고는 개괄적인 내용만을 살펴본다.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은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⁴에서 제시하는 선택적 준거기준이나, 국내에서 공포된 유일한 기준이다. 동 모범규준은 COSO(The Committee of

²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미비점은 경영진과 임직원이 담당 업무를 수행하는 정상적인 과정에서 재무제표 왜곡표시를 예방하거나 적시에 적발할 수 없을 때 발생하며, 설계의 미비점 또는 운영의 미비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재무제표 왜곡표시의 발생가능성 및 금액적 중요성에 따라 단순한 미비점, 유의한 미비점, 중요한 취약점으로 구분된다.

³ 중요한 취약점이란 하나 또는 여러 개 미비점의 결합으로서 재무제표상 중요한 왜곡표시가 예방 또는 적발되지 못할 가능성이 낮지 않은(reasonable possibility) 경우를 말한다. 미국이 중요한 취약점만을 제시하도록 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유의한 미비점까지 보고해야 하는 차이가 있어 정보 이용자들이 오해할 소지가 다소 존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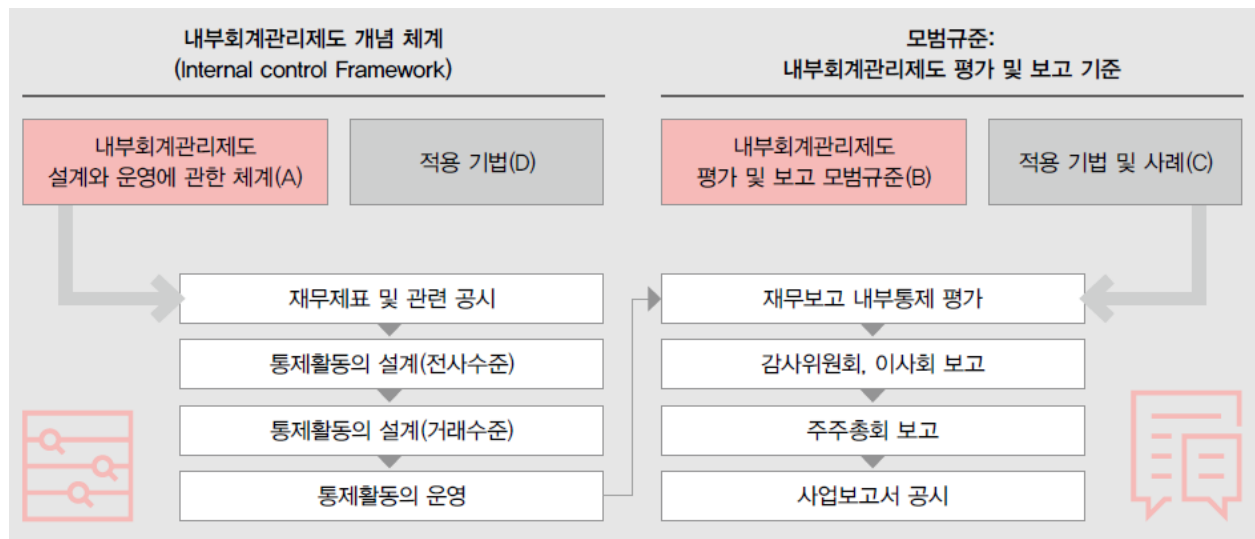
⁴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도입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운영평가보고하는데 필요한 지침인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의 제정 및 운영, 그리고 이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및 관련 전문가를 중심으로 2005년 5월 17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내의 상설기구로 설립되었다.

Sponsoring Organizations of the Treadway Commission) 개념체계의 주요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제시한 것으로서 거의 모든 국내 기업이 동 모범규준을 사용하고 있다.⁵ 운영실태 보고서와 평가보고서에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을 준거기준으로 언급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은 COSO 개념체계의 내용과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준거 기준

	회사	감사인
외감법	준거 기준	준거 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선택적 준거 기준	평가시 확인 사항 (감사기준의 기반 개념)
감사기준(검토 기준)	참고 사항	준거 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의 적용



모범규준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개념체계(이하 ‘개념체계’)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기준(이하 ‘평가 및 보고기준’)으로 구분된다. ‘개념체계’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적용되는 것이고, ‘평가 및 보고 기준’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매년 평가하고 운영실태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보고하는 과정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대표자는 ‘개념체계’와 ‘평가 및 보고기준’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와 운영이 적절했는지 점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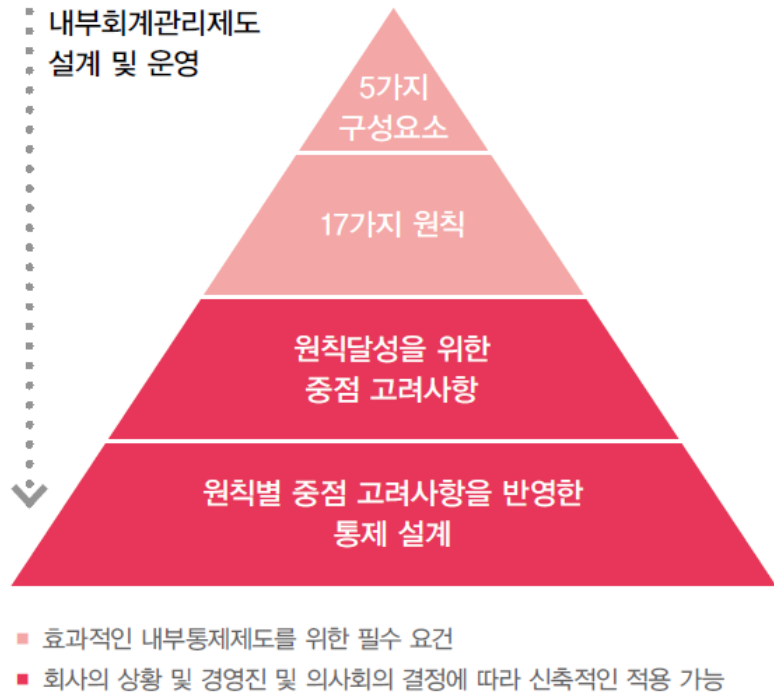
⁵ 미국의 경우 99%의 기업이 COSO 개념체계를 준거 기준으로 사용한다.

여 보고하여야 하고, 감사위원회는 이를 확인하고 평가해야 한다.

2.1. 내부회계관리제도 개념체계

개념체계는 17개 원칙과 75개 중점 고려사항으로 구성된다. 이는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모든 기업에 적용할 수 있는 항목이다.

17개 원칙은 모든 기업이 예외 없이 적용하여야 하는 필수 항목이고, 75개 중점 고려사항은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고려할 항목을 제시한 것으로 회사의 상황 및 경영진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탄력적인 적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원칙이 효과적으로 지켜지지 못한 경우에는 유의한 미비점으로 구분되어 운영실태보고서에 반영된다. 그러므로 17개 원칙과 중점 고려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지침을 정립해야 한다.

감사위원회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원칙은 다음과 같다.

원칙 2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을 감독한다. 이를 위해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된 감독책임을 정하여 내부회계관리규정에 반영한다. 그리고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독을 수행하여야 한다.
원칙 16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독립적인 평가를 수행한다. 회사는 매년 적절한 평가 방법을 선택하여 정기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평가하고 감사위원회는 이를 확인한다.
원칙 17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미비점을 평가하고 필요한 개선활동을 적시에 수행한다. 회사는 발견된 미비점에 대한 개선활동을 수행하여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며, 감사위원회는 개선활동의 적정성을 확인한다. 이는 운영실태 평가보고서에도 반영된다.

감사위원회가 평가를 수행하기 전에 회사는 수백 개에 해당하는 내부통제의 설계와 운영 상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한다. 그렇다면 감사위원회는 운영실태를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은 감사위원회가 운영실태보고서를 평가할 때 경영진이 평가한 방법과 동일한 방식을 반복적으로 수행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문단 95)과 적용기법(문단 158)에서는 감사위원회가 평가계획의 적정성 검토, 운영실태보고서상 미비점의 완전성, 개선조치의 적정성, 외부감사인의 결과와 차이점 확인 등의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이를 독립적인 평가를 수행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감사위원회는 평가시 경영진의 자료를 주로 활용하되 해당 자료나 경영진의 평가 절차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다. 추가 테스트를 위해서 감사위원회는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거나 내부 감사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내부감사기능을 활용하는 경우, 감사위원회 산하에 내부통제전담부서를 배치하거나 내부감사부서에서 추가 테스트를 수행한다면 평가의 객관성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운영실태 평가를 위해 독립적 조직에서 일괄적으로 추가 테스트를 수행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은 모범규준에 존재하지 않는다. 회사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 적합한 평가 방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Ⅲ. 운영실태 평가를 위한 감사위원회의 대응: 평가 조직과 고려사항

1. 감사위원회 운영실태 평가를 위한 지원조직

감사위원회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평가, 감독하는 체계를 수립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사로부터 어떤 내용을 언제 보고받을 것인지를 정해야 한다. 그리고 해당 내용을 보고 받으면 감사위원회는 독립적인 관점에서 이를 평가하고 운영실태 평가보고서를 작성하며, 이사회에 보고하기 위한 세부 사항을 결정한다. 감사위원회는 운영실태 평가 과정에 필요한 전문성과 시간을 고려하여 회사 내 어느 조직의 지원을 얼마나 받을 것인지를 회사와 사전에 논의하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감사위원회 운영실태 평가시 고려사항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를 위해 감사위원회가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과 회사 및 감사인에게 무슨 자료나 분석 결과를 요청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평가를 수행할 것인지에 대해 평가 및 보고 적용기법이 정하고 있는 바를 살펴보자. (적용기법 문단 160)

- 당기 중요한 변경 사항 등을 고려한 위험평가가 적절하고 이에 따른 평가 계획이 작성되었는지

TIP for Audit Committee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된 중요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한 통제활동의 설계를 적시에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2019년부터 적용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에 따른 회계처리가 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서의 시행 전에 미리 파악하고 대처 방안을 수립하였을 것이다. 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재무적인 사항뿐만 아니라 계약 및 자산 관리 프로세스와 해당 거래가 처리되는 시스템 정비도 포함한다.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측면에서 새로운 리스 기준서의 적용으로 인해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업무의 통제활동이 적절하게 설계되고 운영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회사가 적용하는 회계기준뿐만 아니라, 사업, 프로세스, 시스템 및 조직 등에서도 매년 많은 변경이 발생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는 회사가 이러한 변화 사항에 충분히 대비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는 이사회 참석 및 회사, 외부감사인과의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파악할 수 있다. 파악한 정보를 기초로 당기에 발생하는 중요한 변경 사항이 내부회계관리제도와 연관성이 있는지, 그대응이 적절한지 등을 능동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필요한 경우 외부감사인이나 내부감사부서 등을 통해 변경 사항에 대한 확인을 강조하거나 요청할 수 있을 것이다.

- 평가자의 독립성과 적격성, 평가 방식(방법, 범위, 시기)이 적절한지
- 모든 유의한 미비점과 중요한 취약점이 포함되었는지 (별도로 인지한 회계처리 오류 등과 관련된 내부통제 활동의 평가가 적절한 것인지)

TIP for Audit Committee

내부통제전담부서라고 하더라도 모든 유의한 미비점과 중요한 취약점이 포함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감사위원회가 수행할 감독 업무의 수준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다. 그러나 감사위원회가 놓쳐서는 안 되는 항목들이 있다.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이나 회계부서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회계처리 이슈를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인지하게 된 회계처리 이슈와 관련된 내부통제가 적절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핵심적인 감독 과정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대손충당금이 부분적으로 잘못 설정되었으나 이를 적절히 수정하였다는 보고를 받은 상황을 가정해 보자. 이때 감사위원회는 재무제표가 수정되었으니 큰 문제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릴 것이 아니라 (1)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이 타당한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즉, 대손충당금 설정과 관련된 내부통제를 확인하고, 관련 내부통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대손충당금이 잘못 설정된 근본 원인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2) 향후 동일한 이슈가 재발되지 않도록 회사의 통제활동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개선 방안이 관련 정책, 프로세스 및 시스템 등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한다. 추가적으로 감사위원회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도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3) 앞으로 관련 내용의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보고할 것을 요청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가 시행되기 전에, 과거에 발생한 이슈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관련된 내부통제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것이 효율적이다.⁶

-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된 내부고발 사항의 검토 항목을 고려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평가절차와 결과가 적절한지

TIP for Audit Committee

외부감사법도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행위 신고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위원회가 확인할 것을 요구한다. 기업의 조직 구성에 따라 다르겠지만, 내부감사팀이나 윤리경영팀 등의 별도 보고라인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운영실태 보고서상 미비점 평가, 개선 조치의 적정성 및 이행 현황이 적절한지
-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이나 운영실태보고서상 미비점으로 인한 성과평가 반영 계획이나 결과가 적절한지

TIP for Audit Committee

회사의 내부회계관리규정이나 지침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결과를 성과평가 등에 연계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미비점이 발생한 경우나 규정 위반 사항에 대한 처리가 규정이나 지침을 따르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한편, 외부감사인인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계획, 발견사항, 평가결과 등을 지속적으로 감사위원회와 커뮤니케이션할 것이다. 외부감사인이 보고하는 내용과 회사의 운영실태 보고 내역을 비교하거나, 필요한 경우 특정 사안에 대한 확인을 외부감사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외부감사인과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⁶ 금융감독원,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철저한 대비 필요, 2018.12